

검사공무원 증표(제68조 관련)

(앞 쪽)

제	호
직	명
성	명
생	년 월 일
위의 사람은 「관광진흥법」 제78조제4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.	
유효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·도지사  시장·군수·구청장	

90mm×60mm[청색켄트지 120g/m²]

(뒤쪽)

1. 이 증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.
2. 이 증표는 사업장에 출입·검사할 경우에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.
3. 이 증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발행처에 보고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.
4. 사용기간을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행처에 반납하여야 한다.

이 증표를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